
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65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0.

발 의 자 : 김상훈 · 김예지 · 김장겸
박충권 · 김재섭 · 김선교
이종욱 · 강명구 · 이현승
조지연 · 이만희 · 유용원
김대식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그런데 전력망, 정보통신망, 데이터센터 등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인데,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반도체를 해외 수입으로 조달할 경우 국제위기 시 공급 중단, 정보 탈취 등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.

이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·운영하는 경우 국내에서 설계·제조된 반도체의 우선 구매를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의2 신설).
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국산반도체 우선 구매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프라로서 전력망, 정보통신망, 데이터센터(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프라를 구축·운영하려는 경우 국내에서 설계·제조된 반도체(이하 “국산반도체”라 한다)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국산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는 경우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국산반도체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0조의2(국산반도체 우선 구매)</u> <u>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프라로서 전력망, 정보통신망, 데이터센터(「지능정보화기본법」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프라를 구축·운영하려는 경우 국내에서 설계·제조된 반도체(이하 “국산반도체”라 한다)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국산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는 경우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.</u> <u>③ 제1항에 따른 국산반도체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
	<u>령령으로 정한다.</u>
--	------------------